

건설산업동향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합리화 방안

이의섭

2006. 5. 11

·서론 .....	3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변천 연혁 .....	4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문제점 .....	6
·저가하도급심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 .....	7
·소결론 : 저가하도급심사 적용 대상 축소 .....	10
·현행 심사 항목 및 기준 개선안 .....	12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요 약

- ▶ 저가하도급심사제도란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금액이 해당 공사 원도급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 (현행은 82%) 미만시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자의 시공 능력, 하도급자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현행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임.
-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2005년 11월 22일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발표 내용 중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저가하도급심사는 원도급 공사의 낙찰자와 공사 금액을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로 최저가 방법으로 낙찰자와 원도급 공사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어야 함.
- ▶ 또한,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로 원도급자가 낙찰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면제되어야 함. 왜냐하면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낙찰에서 배제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하도급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반경쟁적 제도이기 때문임.
- ▶ 따라서 원도급자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 입찰에 의한 경우는 저가 하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 그러나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입찰에 의한 모든 경우를 제외하기보다는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 여부를 미리 선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치를 권장하게 될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심사를 면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 서론

- 저가하도급심사제도란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금액이 해당 공사 원도급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현행은 82%) 미만시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자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현행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임.
-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이전에는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2004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2005년 6월 30일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발주자에게는 의무 사항이 되었음.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2005년 11월 22일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발표 내용 중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지적한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은 발주청이 저가하도급심사를 기피하고자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경영투명성 저하, 탈세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에서는 하도급 가격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본고는 이에 따라 현행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분석·평가하여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변천 연혁

-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1983년 7월 1일부터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인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처음 도입되었음.
  - 이 당시 도입 취지는 저가하도급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 거래 질서의 교란을 방지한다는 데 있었으며,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75% 미만일 경우 하도급 금액을 심사할 수 있었음.
- 1990년 12월 5일에는 하도급 공정 대상의 내역서상 85% 미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내용을 변경하도록 강화하였고(제 1차 개정).
- 1993년 10월 20일에는 원도급 금액이 예정가격 85% 미만인 경우에만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심사하도록 개정하였음(제2차 개정).
- 1995년 7월 6일에는 원도급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낙찰 금액의 88% 미만인 경우에 하도급 심사를 하도록 개정하였음(제3차 개정).
- 그러나, 계약 담당 공무원의 심사 능력의 한계 및 행정 편의적 운영으로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하도급 계약을 원도급 산출 내역상의 88%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폐단이 있어 1998년 이 제도는 폐지되었음.
  - 또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의 상위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도급저가심사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것도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 중의 하나임.
- 그러나, 1999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조항에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건교부가 2000년 4월 6일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원도급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원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원도급 낙찰률 인상분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건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지침」을 2000년 5월 29일 제정하였음.

- 2002년 9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 1월 11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현행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에서 심사 대상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원도급 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 82%는 이 당시 정하여진 것임.
  - 즉, 원도급자가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즉 간접노무비, 현장 경비 및 일반 관리비가 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82%를 심사 대상의 기준으로 정한 것임.
- 2004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2005년 6월 30일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공사에 대해서 의무화하였음(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변천 연혁에 대해서는 <표 1> 참조).

<표 1>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변천 연혁

구 분	내 용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제정 (1983. 7. 1)	·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75%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함. · 회계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 ·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의 교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
제1차 개정 (1990. 12. 5)	·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5% 미만일 경우 하도급 내용을 변경하도록 강화
제2차 개정 (1993. 10. 20)	· 예정가격의 85% 미만인 경우에만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심사
제3차 개정 (1995. 7. 6)	·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8% 미만인 경우 하도급 내용을 심사
「공사계약일반 조건」에서 폐지 (1999)	·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하도급 계약금액을 원도급 산출 내역서상의 88%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폐단이 있어 폐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지침」 제정 (2000. 5. 29)	· 1999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2000년 5월 29일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을 제정하였음.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으로 명칭 변경 (2003. 1. 11)	· 2002년 9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003년 1월 11일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으로 명칭 변경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공공공사에 대해서 의무화 (2005. 6. 30)	· 종전에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2004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2005년 6월 30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되었음.

##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문제점

- 첫째,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하도급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임.
  - 대부분의 원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 금액을 원도급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것은 하도급 계약 낙찰자 선정에서 경쟁 입찰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임.
  - 즉,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낙찰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 경쟁력 있는 하도급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음.
  
- 둘째, 모든 공종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 금액이 원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규제임.
  - 시장 경제에서 하도급 금액은 하도급 계약 당시의 하도급자의 자산 전속성(예를 들어, 특허 유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하는 것임. 동일한 공사라도 개별 하도급 계약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기에 따라 하도급 가격이 변하여 원도급 가격 대비 하도급 가격의 비율이 변하는 것임.
  - 시장 경제의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하도급 계약 금액을 일률적으로 원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무시하는 규제임.
  
- 셋째, 모든 공종의 하도급 계약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비현실적인 규제임.
  - 하도급 공사 금액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원도급 공사 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82% 미만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하도급 계약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임.

## ■ 저가하도급심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

-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가하도급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이하에서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 저가하도급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하도급 계약 관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 둘째, 원도급자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 상당의 가격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하도급자도 원도급자로부터 가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 셋째, 저가 하도급이면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우월적 지위 여부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가하도급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여기서는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의미가 저가 하도급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첫째,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원도급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로 해석할 수 있음. 만약 건설산업이 소수의 원도급자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산업이라면 특정한 하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가 소수의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독과점 산업이란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공급자가 소수인 산업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산업의 하도급 시장 구조는 수요자가 소수인 수요 독과점 시장이 되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수요 독과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이러한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는 건설산업보다는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자동차산업에서는 건설산업의 저가하도급심사제도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둘째, 우월적 지위 여부를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반드시 하도급자보다 기업 규모면에서 크지 않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본질적으로 기업 규모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건설산업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는 원도급자가 수요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항상 규모 면에서 크지도 않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본질적으로 쌍방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는 거래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 등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원도급자가 항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님.



- 자산전속성이란 특정 자산이 특정 생산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로서 하도급자가 자산전속성이 높으면(예를 들어, 특정 공종에 필수적인 기술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함.
- 다만, 원도급자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특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존재한다고는 할 수 있음.
- 그러나, 원도급자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도급자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원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왜냐하면, 하도급 계약 금액을 원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제도는 원도급자가 다수의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임.
- 단지, 하도급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의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 규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

### 원도급자도 가격 보장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도급자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일정한 가격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하도급자도 원도급자로부터 가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
- 이러한 주장은 원도급자 선정 방법이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적격심사 낙찰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원도급 계약의 낙찰자 선정 방법이 최저가낙찰제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왜냐하면, 최저가낙찰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일정한 가격을 보장받는 낙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임.

####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 확보에 문제

- 저가 하도급이면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이나 하도급 공사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 그러나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 확보는 하도급 가격이 아니라 하도급자의 공사실적과 기술력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품질 확보는 하도급자의 공사 실적, 기술력 및 원도급자의 감독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지 하도급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
- 또한,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함.

### ■ 소결론 : 저가 하도급 심사 적용 대상 축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로 결정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뿐임.
- 즉, 원도급자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도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 입찰에 의한 경우는 저가하도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그러나 원도급자가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입찰에 의한 모든 경우를 제외하기보다는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 여부를 미리 선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즉,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더라도 원도급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 여부를 미리 선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심사를 면제하여야 함.
- 현재 많은 원도급자들은 책임 시공과 하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자체 내규 등에 하도급 저가심의제도 등을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체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부위원회 설치·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안에 의하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므로 향후 원도급자의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저가 하도급 심사를 면제하여야 함.

**<표 2> 저가하도급심사 적용 대상 개선안**

원도급 입찰		하도급 입찰	저가 하도급 심사 여부
수의계약		수의계약	필요
		경쟁입찰	요건구비시 <sup>1)</sup> 불필요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수의계약	필요
		경쟁입찰	요건구비시 <sup>1)</sup> 불필요
	최저가낙찰제	수의계약	불필요
		경쟁입찰	불필요

주 : 1)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 여부를 미리 선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경우

## ■ 현행 심사 항목 및 기준 개선안

- 현행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심사 항목은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60점), 하도급자의 시공 능력(10점), 하도급자의 신뢰도(10점), 하도급 공사의 여건(1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3> 참조).
- 이하에서는 이들 심사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표 3 > 현행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한도	배점요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6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 - 2 \left( \frac{82}{100} - \frac{\text{하도급금액}}{\text{원도급금액}} \right) \times 10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30	① 1,000억원미만 공사 $30 - 1/2 \left( \frac{90}{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1,000억원 이상 공사 $30 - 1/2 \left( \frac{88}{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0)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사액 ○ 당해 공사 규모의 3배 이상 (5) ○ 당해 공사 규모의 2배 이상 (4) ○ 당해 공사 규모의 1배 이상 (3) ○ 당해 공사 규모의 1배 미만 (2)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사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하수급인의 동종 공사 시공경험 ○ 당해 공사 규모의 2배 이상 (5) ○ 당해 공사 규모의 1.5배 이상 (4) ○ 당해 공사 규모의 1배 이상 (3) ○ 당해 공사 규모의 1배 미만 (2)	5 (5) (4) (3) (2)	○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0)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2년 이상 (5) ○ 1년 이상 (4) ○ 1년 미만 (3) ○ 미등록 (2)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60점 만점)은 다시 하도급 공사의 낙찰 비율(30점 만점)과 원도급 공사의 낙찰 비율(30점 만점)로 세분됨.

- 하도급 공사의 낙찰 비율에 대한 배점 요령(산식)은

$$30 - 2\left(\frac{82}{100} - \text{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right) \times 100$$

으로서 원도급 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이 82%에서 1% 포인트 떨어짐에 따라 2점씩 감소되는 형태임.

- 원도급 공사의 낙찰 비율에 대한 배점 요령(산식)은

1,0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30 - \frac{1}{2}\left(\frac{90}{100} - \text{원도급금액/예정가격}\right) \times 100$$

으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원도급 금액의 비율이 90%에서 1% 포인트 떨어짐에 따라 0.5점씩 감소되는 형태이고

1,0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30 - \frac{1}{2}\left(\frac{88}{100} - \text{원도급금액/예정가격}\right) \times 100$$

으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원도급 금액의 비율이 88%에서 1% 포인트 떨어짐에 따라 0.5점씩 감소되는 형태임.

-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항목 중 원도급 공사의 낙찰 비율은 원도급의 낙찰제 선정 방법이 적격심사를 염두에 두고 적용되던 심사 항목으로, 만약 저가 하도급 심사를 최저낙찰제 공사에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폐지되어야 함.
- 현행 최저낙찰 공사의 경우 낙찰율이 60%인 경우에는 원도급 공사의 낙찰 비율에서만 1,000억원 미만 공사는 15점이 감점되고,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14점이 감점되어, 승인 점수인 85점 이상이 나오기 어려움.

###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5점 만점)과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5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이중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공시액에서 만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임.
- 예를 들어, 300억원 규모의 토공사에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0.5%안에 속하는 전문업체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공시액 점수 산정 스케일을 조정하여야 함.

### 하도급자의 신뢰도

- 하수급인의 신뢰도는 협력업체 등록기간(5점 만점)과 전문건설업 영위기간(5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
- 이중 협력업체 등록 기간은 공사의 품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함.

### 하도급 공사의 여건

- 하도급 공사의 여건은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10점 만점), 하도급 공사의 계약 기간(4점 만점), 하도급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5점 만점), 하수급 공사의 시공 여건(1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
- 이중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는 발주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폐해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